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후보자의 경우
5년 이상 업무 경험자 추천 의무화〉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38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후보자의 경우 5년 이상 업무 경험자 추천 의무화(안 제30조제4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3. 4.

다. 회 부 일 : 2025. 3.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공공기관 기관장과 주요 임원의 정실주의에 의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실주의 인사 관행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저해하고 개혁과 업무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관련 분야의 업무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연장 선상의 각종 논란으로 공사 사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하였음.

항공 관련 사고는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항공 관련 분야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임원은 항공 안전과 공항 안전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과 관련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후보자의 경우 5년 이상 업무 경험자 추천 의무화(안 제30조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함.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영지침으로 정함 <u><신 설></u>	○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 (현행과 같음) - <u>임원추천위원회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후보자(감사 제외)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함</u>

현행법¹⁾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경영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제25조·제2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다.

있음.

개정안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설립 목적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 업무 경험이 있는 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임.

개정안은 해당 공사 임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임원 추천과 관련된 ‘낙하산’ 인사 논란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논란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이러한 논란은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본연의 목적 달성에 저해가 되는 문제가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이와 같은 낙하산 논란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된 업무인 항공 및 공항에 관련된 사항은 최근 무안공항 참사와 같이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국민의 생명·신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행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에 대한 임원의 임기나 임명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의 자격요건 역시 경영지침에 따라 정하도록 할 뿐 개별 기관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에 대해서만 직접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2) 한편,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으로 공공기관의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경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인재 선발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임원은 전문성 뿐만 아니라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추 천위원회가 「한국공항공사 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 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후 보자(감사 후보자는 제외한다) 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 사의 설립 목적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적인 업무 경험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7